

2007년도 국내언론관계판결의 동향

I. 들어가는 말

선진 취재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미명 아래 노무현 정부는 기자실 통제함을 강행하였고 이 결과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취임 초기에 언론의 오보 및 부정확한 기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새롭게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이의 반면교사로 기자실 복원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정부와 언론의 취재시스템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주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체제에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문제는 민주주의에 필수불가결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자유가 서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호 충돌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발생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제3자가 향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은 우선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

성 선 제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 미 인디애나대 법학석사 및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변호사
- 가톨릭대, 영산대 법대 교수

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4조에 의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 형법 제307조 이하의 명예에 관한 죄 등은 위 헌법규정을 구체화하고 있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 검양을 미덕으로 공개적인 표현을 삼가는 전통적 사회에서 상대주의를 기본으로 개방적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서구식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출판에 관한 법 이론과 실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2007년도에 우리 사법부가 형성한 언론관계 주요 판례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언론관계 판례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언론관계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고찰하고, 공인의 언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소송으로 나누어 법원의 판단과 이에 대한 적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7년 언론관계 판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적극적인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동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에 비하여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 대표적인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첫째,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1월 24일자 판결(2006나28135)에서 청구한 반론보도문이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거나 원보도가 인용한 제3자의 의견이 실제로 표명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표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언론사에 반론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난 2006년 2월 10일 파기환송한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재판에서 제1심 판결 중 동아일보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아일보의 취소재판보도를 허용하며 국정홍보처는 동아일보에 18,896,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정홍보처(이하 신청인)는 동아일보(이하 피신청인)가 지난 2001년 7월 4일과 5일 『국정홍보처장 ‘특하명 성명’』 제하의 보도 등 3차례에 걸쳐 국정홍보처장이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비정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자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제1심과 제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보도에 진위의 입증이 가능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반론보도청구권 인정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주장’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심파기 후 제2심 법원으로 환송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을 담당할 법원은 판결문에

서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표명인지는 원보도와 이에 대하여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서로 다른 구체적인 경과를 알리거나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원보도도 일응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보도에서 제3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 반론보도청구를 하면서 문제 삼는 대상이 그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하였는지의 여부라면 이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것이나, 원보도가 제3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으로 보도하였고, 반론보도문에서도 제3자가 실제 그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 표명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보도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으로 보면, 이 사건 보도는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빌려 신청인의 일련의 성명 발표가 그 내용상 부적절하다거나 정부의 권위에 비추어 남발된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사의 의견 표명 내지 비평 또는 ‘정부의 공식성명 만큼이라도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 내지 요청을 개진한 것이라고 보이고, 또 다른 보도는 그 자체로 보아 의견 표명 내지 논평에 해당하는 기사임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내용도 당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 피신청인이 자신의 입장과 이에 따른 보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립된 정부 성명의 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사 자신의 의견을 표명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이러한 점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론보도문에 의하더라도, 2001년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그 성명 내용에 대한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로 전제하고, 그 성명 내용이 공정보도를 촉구하였을 뿐, 언론보도를 비난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며,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언론 탄압이 아니라는 평가적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고, 제3자의 논평을 인용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그 제3자가 그러한 의견을 진술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론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므로 이 사건 보도는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인 주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취소재판보도 등 신청에 관한 판단에 대해 “(구) 정간법 제19조의 2는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여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언론사가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환송 후 당심이 이 사건 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미 반론보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

며, 피신청인이 환송 후 당심에서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당심은 취소재판의 보도 및 손해배상을 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의견의 경우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준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년 4월 12일자 판결(2006가합16537)에서 원고가 협상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년 4월 12일 외교통상부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6년 7월 25일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 현지 및 해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원고는 범정부차원에서 해적들의 과거 납치사례와 소말리아 현지 정세 등 광범위한 정보 분석과 전문가의 조언에 기초하여 협상에 노력하여 왔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현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사실적 주장에 대해 정보가 부

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원고가 동원호 선원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도는 원고가 소말리아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적인 협조를 요청해 선원들이 납치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동원호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원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사건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반론보도청구 소송의 기본적 법리에 충실하게 사실적 주장을 판단하여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인정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형식적 법리에 치우쳐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년 4월 12일자 판결(2006가합12856)에서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방송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설 연구소와 동 연구소 소속 비상임 운영위원들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심판신청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 방송사가 지난 2006년 3월 26일 20시 「KBS 스페셜」 프로그램 “〈이해관계, 일자리의 위기〉 제1편 : 자본은 왜 파업하는가” 제하의 방송에서 “원고 연구소가 대표적인 외국계 투기 자본인 소버린에게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을 제공하였고, 원고 장모 씨 등이 대표적인 시민 단체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소속되어 SK 그룹에 대하여 소액주주운동을 하면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그들이 운영위원으로 있는 원고 연구소가 SK 그룹과 경영권 다툼을 벌였던 반대 측 당사자인 소버린에게 제공하였다”면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공적 활동과 사적 이익의 충돌로서 비윤리적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자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원고들의 공정성과 도덕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정정보도청구는 그것이 사실적 주장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 이 때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은 요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방송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대한 것인지 차례로 살펴본다”고 전제한 후 “‘원고 연구소가 소버린에게 유료로 SK의 지배구조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부분, ‘원고 장모 씨 등이 영리 목적의 원고 연구소에 소속되어 소버린에게 컨설팅 해 주었다’는 부분, ‘원고 장모 씨 등이 소버린 측을 만나 상담을 해줬다’는 부분, ‘원고들이 SK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SK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소버린에게 팔았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정보도를 방송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천명하면서 진실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7월 18일자 판결(2006가합102784)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

라고 볼 근거가 없다면 정정보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원고)이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가 2006년 10월 20일자 A1면 『조선일보 또 세무조사』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A2면 『“컴퓨터 돌려 보니 조선일보 뿔혀”』 제하의 기사, 2006년 10월 21일자 A2면 『“종합지 매출 1위라 뿔었다” 선정 이유 하루 만에 뒤집어』 제하의 기사 및 같은 날 A35면 『5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덮친 세무조사』 제하의 사실 등을 통해 원고가 피고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이중 잣대가 있음을 시인했으며 2001년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를 인정한 전근표 국세청장의 2006년 7월 인사청문회 발언을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1년 세무조사 때도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뒤집었고 국세청의 전산성실도분석시스템이 국세청 내에서조차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언론중재법 제14조는 ‘정정보도의 요건’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본문에서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은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과 다름을 주장·입증하여야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문제 삼은 청장들의 발언에 대한 표현과 기사의 일부

표현은 어느 정도의 평가 또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보도에서 그 기초되는 청장들의 발언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점, 전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국세청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한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보도를 허위사실의 적시라거나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허위사실 여부의 판단에 있어 일간지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100% 진실이 아닌 경우 모두 허위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Ⅲ. 명예훼손 소송

2007년 언론관계 판결에서도 명예훼손 소송이 주를 이루었다. 명예훼손 소송이 양적으로는 주를 이루고 있고 법원의 판결 동향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전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이전에 비하여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는 판결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 대표적인 판결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첫째, 대법원은 2007년 6월 1일자 판결(2004다61372)에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

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인터넷 형식의 기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고 피해자가 공적(公的)인 인물이라 하여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가 현실적인 악의에 기한 것임을 그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기존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며, 이른바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한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범,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의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문체의 기사

중 원고의 범죄경력을 보도한 부분에 관하여 기사의 주된 보도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도 내용과 동종의 전과도 아니고 국민들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부분에 관한 보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연예인 겸 기업의 대표로서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경력의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그 판단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특히 보도 내용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보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다.

문제의 보도에 관하여 피고 언론사가 위 보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매체의 특성이 보도의 긴급성을 그다지 요하지 않는 주간지 또는 월간지여서 사실 확인의 요청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에도 정확한 사실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인터뷰 내용만을 기사화하여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들이 위 각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특별히 공인과 사인을 구별하지 않으며, 또한 현실적 악의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는 전형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공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를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5월 9일자 판결(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에서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5월 9일 장모

씨 등이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택상의 3녀인 장모 씨, 이승만의 양자인 이모 씨 등의 원고들은 피고 방송사가 방영한 드라마 「서울1945」에서 장택상과 이승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어느 정도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드라마의 작가나 제작자가 소재로 삼은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으로 수긍할 정도의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그러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추측, 풍자 내지 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적시된 사실이 중대한 허위로서 고인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들이 여운형 암살 배후에 이승만, 장택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 사건 드라마에서 마치 이승만, 장택상이 박창주를 통하여 여운형을 암살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명확하게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구를 기본으로 하는 드라마의 성격상 예술적 표현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원고 이모 씨 등이 이 사건 드라마에서 이승만이 친일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고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묘

사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이 친일경력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부터 일부 정치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과정 등에서 미군정으로부터 다소의 후원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근거자료와 정황들이 존재하는 이상,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거자료와 정황에 기초하여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표현일 뿐 왜곡이나 억측 또는 중대한 허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공익 또는 공인이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소 과장되고 추측적인 표현의 사용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피할 수 없으며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IV. 언론사 간 명예훼손 소송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동안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의 논조의 상이성 및 사실의 일부 전달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적이고 진일보한 태도의 결과 2007년에는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행스럽게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6월 27일자 판결(2006가합70429)에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시사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의 편집장, 편집인,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임대표였던 최모 씨, 한국기자협회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시사저널에서 기사삭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시사저널 경영진의 기사삭제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 논평, 성명을 보도하거나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기사를 삭제한 것은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발표한 이 사건 기사 등에는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 원고가 중앙일보 출신으로 삼성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통적으로 적시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삭제지시가 편집권의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등은 시사저널에서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발생한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인과 편집국장 사이의 편집권 침해 여부의 논란을 다룬 것으로서 그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원고는 편집국장이 원고의 기사 삭

제 권유 또는 지시에 불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편집인의 자격으로 시사저널 회장 등과의 간부회의를 열면서 더 이상 편집국장에게는 회의 개최 사실 및 그 후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이 직접 인쇄소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편집국장이 이미 기사 삭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는 하나 편집실무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간부회의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기사 삭제를 결정한 점과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충분히 편집국장 등 정상적인 편집 체계를 통하여 위 결정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편집국장 등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편집인과 편집국장 등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원고의 이러한 기사 삭제 지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중앙일보 출신으로 삼성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삼성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역시 "원고의 이력 및 그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삼성 고위층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친분이 두텁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기사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때문인 것처럼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원고가 편집국장에게 기사 삭제를 권유 또는 지시하면서 강조한 것은 위 기사로 인한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명예훼손보다는 자신의 삼성고위층과의 친분관계였으며, 당시까지 원고는 자신이 삭제를 권유하던 기사를 본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원고의 이력과 간부회의를 통한 기사 삭제지시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태를 직접 겪은 시사저널의 기자들과 그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의 내부적 자유 즉, 편집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고양시킨 의미 있는 판결이다.

V. 인터넷 관련 소송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2007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5월 18일자 판결(2005가합64571)에서 인터넷에 명예훼손적인 게시물이 존재하는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현실세계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세계에서도 위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 인터넷의 등장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영역이 확대되고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이 커졌음에도 공적 인물이 아닌 사인의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적 영역이 지켜져야 하는 점, 인터넷서비스 제공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피고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점, 인터넷이 여론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매체로 자리잡은 만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서는 사상의 자유시장 논리에 기댈 것이 아니라 불량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점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발생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는 점, 실명확인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누구나도 포털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 인터넷의 이용은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역무를 이용할 권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라 함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정도의 책임을 부과할 경우 법적인 판단에 앞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사적 검열이 이루어져 여론이 왜곡되거나 정당하게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에 대하여 손쉽게

삭제하는 편을 택할 경우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염려가 있는 점,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제3자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단지 신고함으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위 표현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네이버, 다음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뉴스 서비스란에 조선일보의 기사, 동아닷컴의 디지털뉴스팀의 기사를 연속하여 올리고, 네티즌들이 위 기사들에 원고의 실명 등의 정보를 댓글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였다. 위 기사들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원고의 실명 및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기사에는 특정인의 실명, 사진,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미니홈피의 초기화면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와 특정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기사에서 말하는 인물이 원고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미니홈피를 방문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 기사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간단한 검색을 통하여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에서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피고들로서는 위 기사들로 인하여 사인인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와 함께 사망한 특정인과 관련한 원고에 관한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의 기사들 중에는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원고의 신원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 없으므로 이를 게시하였다 하여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실명, 미니홈피의 주소, 또는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하여 쉽게 원고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기사들이 가리키는 '김모 씨'가 원고임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신문사, 방송사, 인터넷신문사 등 뉴스서비스업체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따라 뉴스 기사를 공급받아 이를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고 있고, 뉴스서비스 담당자는 제공받은 기사들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중요도에 따라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하는 등 최소한의 작업만 수행할 수 있을 뿐 기사를 수정, 삭제, 편집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뉴스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인 피고들은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언론사들로부터 전송받는 기사들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속보성, 정보성, 화제성 등의 편집기준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여 '편집판'이라 불리는 주요화면(뉴스홈, 정치면, 사회면, IT면 등)에 배치하기도 하는 점(따라서 비슷한 범주의 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포털사이트의 편집판에 오르는 주요 기사는 제각기 다르다), 편집판의 제한적 공간 및 독자들의 흥미도 등을 고려하여 기사의 제목을 변경하여 붙이기도 하는 점, 더구나 포털사이트는 게시하는 기사 밑에 네티즌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교환 또는 여론이 형성되도록 유도하기도 하는 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와의 사이에 기사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언론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들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 점, 기사의 출처인 언론사의 경우에는 해당 기사 하나만 게시되나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게시하게 되므로 기사로 인한 영향력이 기사의 작성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단순한 기사 정보의 전달자 역할에 그쳐 그 기사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언론사로부터 송부되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된 채 남아있는 기사가 아니라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편집판에 올리기 위하여 기사 내용을 검토하여 분류한 기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이미 한 기사가 네티즌들의 큰 반응을 불러 일으켰음에도 이후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중복하여 게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하여 네티즌이 분야별 뉴스란을 통하여 위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피고들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네티즌들이 원고의 신상정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교환하고, 블로그, 카페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원고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법원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적극 게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 불법적인 내용의 표현물이 너무 많이 게시되고 있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면 삭제 요청, 해당 커뮤니티 활동 정지 등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네티즌에게 해당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으로서 이용자와 정보를 연결시켜주는 가치중립적인 서비스에 불과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한 카페, 클럽 등 동호회, 블로그, 미니홈피 등의 1인 미디어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게시되는 표현물에 대하여는 그 운영자 또는 게시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검색서비스의 경우 비록 피고들이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검색을 통하여 노출되는 자료에 차등을 두는 등 검색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인 자료들이 검색될 위험이 큰 상황을 인식하였다면 이른바 금칙어 설정 등으로 그러한 자료들이 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의 경우 게시된 표현물에 대하여 항시적인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커뮤니티 영역이 당초 피고들이 제공한 영역이고 또한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 활동량 등에 따라 피고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는 등 이익을 얻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러한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게시물들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여 피고들 검색어 순위에서 상위에 오르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리

는 등 피고들이 쉽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뉴스 기사나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그러한 표현물의 위치를 네티즌에게 알려주는 등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물들이 확산되도록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도 상치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관계로 자기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VI.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07년의 언론관계 판결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전에 형성된 이론적 기초와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전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두텁게 보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언론관계 판결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첫째, 노무현 정부의 언론의 오보 및 과장보도에 대한 강경하고도 적극적인 입장 천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에 의한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법원은 정부기관의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대부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중시하여 정부기관에 패소 판결을 내리고 언론을 보호하는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으나 일부의 사건에서는 충분한 취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미진하고 일방적 보도로 인하여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하였다. 일부의 판결은 반론보도청구 소송의 기본적 법리에 충실하게 사실적 주장을 판단하여 반론보도청구 소송을 인정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형식적 법리에 치우쳐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부의 판결은 허위 사실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천명하면서 진실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강하게 인정한 것은 자칫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그 이전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동안 법원은 꾸준히 언론사 간의 상호 비판을 일관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사이의 논조의 상이성 및 사실의 일부 전달에 대하여 더 이상 법원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일관적이고 진일보한 태도의 결과 2007년에는 언론사 간의 명예훼손 소송이 다행스럽게 대폭적으로 감소하였다. 시사저널 판결은 언론의 자유의 내부적 자유 즉, 편집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는 공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면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고양시킨 의미 있는 판결이다.

셋째, 인터넷과 관련된 언론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

터넷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해서 새로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2007년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특징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와도 상치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 관계로 자기검열을 강화하여 언론의 자유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우려스러운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은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항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양자가 충돌할 때 법원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공인이나 공적인 문제

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정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위하여 명예훼손의 인정은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의 2007년 언론관계 판결을 검토해 본 결과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을 중시하는 판결이 다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추상적으로 충분한 취재의 기회를 전제하고 이것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을 경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고 인터넷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프라인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제한 없이, 활발하고 널리 개방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나 공직자에 대한 격렬하고, 따갑고 때로는 불유쾌한 날카로운 공격을 포함할 수 있다”는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의 격언을 되새기며 이 글을 맺는다. □